민사재판준비에 대한 리해

박 철 남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건취급처리에서 과학성과 객관성, 신중성을 보장하는데서 재판기관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이 중요합니다.》(《김정일선집》 중보판 제10권 124폐지)

재판소가 사건취급처리에서 과학성과 객관성, 신중성을 보장하기 위하여서는 재판기 관 일군들의 역할을 높이는것이 중요하다.

재판일군들이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야 재판준비를 실속있게 잘할수 있으며 재판심리를 원만히 보장하고 사건을 정확히 해결할수 있다.

재판일군들이 재판준비를 잘하기 위해서는 재판준비에 대한 리해부터 바로 가져야 한다. 그래야 재판준비단계의 설정목적에 맞게 증거수집을 비롯한 여러가지 소송상문제들을 법 적요구에 맞게 정확히 해결해나갈수 있다.

민사재판준비에 대한 리해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먼저 재판준비의 본질을 정확히 인식하는것이다.

민사재판준비는 판사가 재판심리에서 민사분쟁문제를 법적요구에 맞게 정확히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것을 마련하거나 갖추는 활동이라고 말할수 있다. 다시말하여 민사재판준비란 소송이 제기된 때로부터 재판심리에 들어가기 전까지 사건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증거와 기타 소송자료들을 수집, 채택하며 사건의 취급처리와 관련한 일련의 소송상의문제들을 해결할것을 목적으로 판사가 수행하는 행위들을 말한다.

민사재판준비는 재판심리의 성과적보장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소송단계로 된다.

민사소송에서 재판준비는 우선 사건해결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마련하기 위한 단계이다.

사건의 해결과정은 사건해결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고 조사검토하는 과정이라고 말할수 있다. 그러므로 사건의 성과적해결은 재판소가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는가 못하는가에 달려있다.

형사소송과 달리 민사소송에서 사건해결에 필요한 증거는 소송을 제기하는 소송당사자들에 의하여 재판소에 제출되게 된다. 그러나 민사소송당사자들의 증거수집능력은 서로다르며 그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건을 해결할수 없는 경우도 있게 된다.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하여 소송당사자들은 자기의 주장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증거들을 가지고있지 못하거나 수집하지 못하여 증거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할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재판소가증거부족으로 하여 당사자들사이에 제기된 분쟁문제를 옳게 해결할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재판소는 당사자들이 제출하는 증거에만 매달리지 말고 사건을 정확히 해결하기 위하여 증거를 충분히 마련하여야 한다.

민사소송에서 재판준비는 또한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에 제기되는 여러가지 수속법상 문제들을 제때에 해결하기 위한 단계이다.

재판소에 제기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소송진행과정에는 관할문제, 당사자적격문제, 이러저러한 사람들(공동당사자, 참가자)의 소송참가문제, 증거보존, 감정인교체, 재산담보 처분 등 여러가지 수속법상문제들이 제기되게 된다. 소송이 제기된 이후 재판심리를 준비하는 과정에 제기되는 수속법상문제들을 제때에 해결하지 않는다면 소송을 순조롭게 진행할수 없게 할뿐아니라 사건의 정당한 해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물론 재판심리에서도 수속법상문제가 제기될수 있으며 또 재판심리에서도 수속법상문제들을 해결할수 있다.

그러나 증거보존과 같은 수속법상문제를 재판심리전에 제때에 해결하지 않고 재판심리를 진행한다면 증거의 부족으로 소송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할수 없다. 감정인교체신청과 같은 당사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사건을 해결하게 된다면 사건의 충분한조사와 정당한 해결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재산담보처분과 같은 수속법상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재판심리를 진행하여 판결을 내린다면 사건을 정확히 해결할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재판소는 사건수속과정에 제기되는 여러가지 수속법상문제들을 재판심리전에 제때에 해결하기 위한 재판준비를 하여야 하는것이다.

민사재판준비에 대한 리해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민사소송체계에서 재판준비가 차지하는 위치에 대하여 정확히 인식하는것이다.

재판준비는 민사소송체계에서 재판심리의 성과적보장을 위하여 의무적으로 거쳐야 할 필수적인 단계로서의 위치를 차지한다.

민사소송에서는 형사소송에서처럼 피심자를 정확히 확정하고 범죄사건의 전모를 완전하고 정확하게 밝혀내기 위하여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보충하기 위한 예심단계가 없다.

그러므로 민사소송에서는 재판심리에서 제기된 사건을 제때에 정확히 해결할수 있는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소송단계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민사소송에서 재판준비단계는 형사소송에서 예심단계와 같이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민사소송의 필수적단계로 되며 재판소가 이 단계에서 재판준비를 얼마나 실속있게 하는가에 따라 사건해결의 운명이 결정되게 된다.

재판준비단계에서의 면밀한 사전준비가 없이는 재판심리에서 증거부족으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해명할수 없고 사건의 옳바른 해결도 기대할수 없다. 다시말하여 재판준비단계에서 미리 필요한 준비를 갖추지 않고서는 재판심리에서 많은 시간과 로력을 랑비하면서도 재판을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없다.

물론 재판심리에서도 필요에 따라 사실관계를 정확히 해명하기 위하여 새로운 증거를 수집할수도 있다. 재판심리에서 새로운 증거를 수집하게 되는것은 재판준비에서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지 못하여 그러한 증거가 없이는 사건을 해결할수 없는 경우에만 하는것이지 재판심리에서 의무적으로 해야 할 일은 아니다. 만일 재판심리에서 증거를 수집하게 되면 재판심리를 성과적으로 보장하는데 지장을 주게 된다. 그러므로 재판심리전에 사건해결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마련하는것은 재판심리의 성과적진행을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

민사재판준비에 대한 리해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재판준비에서 지켜야 할 원칙적 요구에 대하여 정확히 인식하는것이다.

재판준비에서 지켜야 할 원칙적요구는 우선 재판준비를 공개의 방법으로 하는것이다. 재판준비를 비롯한 소송의 모든 단계에서 소송행위를 공개하는것은 소송에서 민주주 의를 철저히 구현하여 소송당사자들에게 부여된 소송상권리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필 수적인 요구로 된다. 소송이 진정으로 인민대중의 법적권리와 리익을 보호해주는 인민적인 소송으로 되자면 소송의 모든 단계에서 소송행위를 공개하여야 한다. 소송행위를 일정한 장소에서 공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재판심리를 의미하지만 재판준비단계에서도 당사자들의 증거제출, 재산 담보처분이나 증거보존, 판사의 현지조사와 같은 소송행위들은 공개되도록 하여야 한다.

소송절차의 특징은 그것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분쟁당사자사이, 당사자와 재판소사이의 대화과정이라는데 있다. 이러한 대화과정은 재판심리에서는 물론 재판준비단계에서도 공개되여야 한다.

현대소송제도에서는 소송에서 불의에 증거를 내놓는것은 사실상 공정한 소송이 아니라고 보고있으며 소송이 반드시 분쟁쌍방의 공평한 론쟁으로 되게 하며 소송진행과정을 공개하도록 법적규제를 하였다. 이러한 법적규제는 모든 소송행위를 호상 공개하여 당사자가 제때에 대방당사자의 소송행위의 후과를 예견하고 그에 대처할수 있는 대책을 취할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재판준비단계에서 재판소는 당사자들의 소송행위를 호상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분쟁당사자들이 서로의 주장과 증거를 알수 있게 하여야 한다.

재판준비에서 지켜야 할 원칙적요구는 또한 판사가 공정한 립장을 견지하는것이다.

소송은 당사자쌍방이 분쟁을 자체로 해결할수 없는 조건에서 재판소에 의하여 당사자들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활동이다. 때문에 사건해결에서 판사는 그 어느 당사자에게도 치우치지 말고 공정한 립장을 견지하여야 한다.

판사는 우리 당의 사법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법적요구에 맞게 재판준비단계에서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판사가 공정한 립장을 견지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판사가 사건의 사실사정과 사건의 해결에 리해관계가 없어야 한다는것이며 다른 하나는 판사가 임의의 일방당사자에 대하여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지 말아야 한다는것이다.

판사가 사건의 사실사정과 사건해결에 리해관계가 없어야 한다는것은 사건해결에 리해관계가 있는 판사는 사건을 맡지 말아야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소송관계자배제신청제도에 대한 법적규제를 통하여 그 해결이 담보된다. 실례로 재판준비나 재판심리에서 사건당사자들은 판사나 인민참심원이 사건해결에 리해관계를 가지고있는 경우에는 바꾸어줄것을 신청할수 있다.

이와 함께 소송에서 판사는 당사자쌍방에게 소송행위에 필요한 조건을 대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편견이 없어야 한다. 판사는 재판준비에서 어느 한켠 당사자에게 치우치는 일이 없이 공정한 립장을 견지하여야 하며 오직 객관적으로 존재한 사건의 사실관계에따라 그리고 재판심리에서 얻어진 자신의 확신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한다.

민사재판준비에 대한 리해에서 중요한것은 다음으로 재판준비단계에서 판사가 수행 하여야 할 임무에 대하여 정확히 인식하는것이다.

재판준비는 판사가 단독으로 하는것만큼 판사가 재판준비단계에서 자기앞에 부여된 임무를 정확히 알고 그것을 원만히 수행하여야 재판준비의 목적을 달성할수 있다.

재판준비단계에서 판사가 수행하여야 할 임무는 우선 사건해결에 필요한 증거를 충 분히 수집하는것이다.

민사소송에서 재판소에 제기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사건해결에 필요한 증거

를 수집하고 그것을 하나하나 확정하여야 한다. 만일 당사자나 재판소가 재판준비단계에 서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지 못한다면 증거의 정리 및 고착임무를 완성할수 없다.

그러나 사건해결에 필요한 증거는 손쉽게 수집되는것이 아니다. 그것은 소송당사자가 소송에서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의 제시는 자기가 가지고있는 증거자료에 기초 하는것과 함께 많은 경우 상대방당사자와 소송밖의 제3자의 협조를 필요로 하기때문이다.

당사자들은 자기에게 불리한 증거자료를 스스로 내놓으려고 하지 않으며 이러한 증거자료의 수집은 재판소의 직권에 의하여서만 원만히 실현될수 있다. 그리므로 재판준비단계에서 사건해결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는것은 사건해결의 운명과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이며 재판준비단계에서 판사가 수행하여야 할 첫째가는 임무로 된다.

재판준비단계에서 판사가 수행하여야 할 임무는 또한 론쟁점을 정확히 확정하고 증 거의 채택을 잘하는것이다.

론쟁점을 정확히 확정하고 증거의 채택을 잘한다는것은 당사자들이 서로 다투는 주 장사실을 명백히 확정하고 사건의 사실사정과 관련이 있는 증거와 법에서 허용하는 증거 만을 채택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재판준비단계에서 론쟁점을 정확히 확정하고 증거의 채택을 잘하여야 앞으로 진행하게 될 재판심리에서 심리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심리의 중심을 정확히 포착할수 있으며 뚜렷한 방향과 목표를 가지고 재판심리를 목적지향성있게 이끌어나갈수 있게 한다.

재판준비단계에서 당사자들이 제출하는 증거는 사건해결에 의의를 가지는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것도 있을수 있으며 일련의 사건들에서는 법에서 허용하는 증거에 의해서만 사건을 해결할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므로 판사는 재판준비단계에서 당사자들이 제시하는 증거를 사건해결과 관련이 있는가를 따져보고 관련이 있는 증거만을 증거로 채 택하여야 하며 법에서 허용하는 증거만을 채택하여야 한다.

법에서 허용하는 증거만을 채택하여야 한다는것은 일련의 사건들에서 법이 허용하는 증거외에는 다른 증거의 리용을 허용하지 않는다는것을 의미한다.

재판준비단계에서 판사가 수행하여야 할 임무는 또한 사건수속의 진행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여러가지 수속법상문제들을 해결하는것이다.

재판준비단계에서는 당사자교체문제, 참가자인입문제, 사건의 병합과 분리문제, 맞소송, 화해, 사건기각 등 여러가지 수속법상문제들이 제기된다. 그러므로 재판준비과정에 수속의 진행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이러저러한 수속법상문제들을 제때에 원만히 해결하지 않는다면 소송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할수 없을뿐아니라 사건을 정당하게 해결할수 없다.

실례로 재판준비단계에서 제기되는 사건의 병합과 분리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증 거조사의 중복, 로력과 시간의 랑비 등으로 하여 사건을 신속정확히 해결할수 없으며 또 당사자교체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사건과 관련이 없는 당사자를 놓고 재판심리를 진 행하는 결과를 초래할수 있다.

그러므로 판사는 재판준비단계에서 제기되는 여러가지 수속법상문제들을 제때에 정확히 해결하여야 소송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고 사건을 정확히 해결할수 있다.

모든 재판일군들은 민사재판준비에 대한 리해를 바로 가지고 재판준비를 원만히 하여 재판심리를 성과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제기된 민사사건을 당정책과 법적요구에 맞게 정확히 해결해나가도록 하여야 할것이다.